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참고자료**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9월 3일(목) 차관회의 시작(오전10시30분) 이후 보도 가능

배포일시	2020. 9. 2.(수)	담당부서	혁신행정담당관
담당과장	이규봉 과장(044-203-5530)	담 당 자	김다은 사무관(044-203-5537)

산업부, 적극행정으로 규제혁신 · 기업애로 해소에 앞장선다

- 산업부 정승일 차관, 9.3일 차관회의서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 -

□ **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**은 **9.3일(목)** 개최된 **제36차 차관회의**에서 "적극행정 연속 발표"의 첫 번째 주자로서 산업부의 '20년 하반기 **적극행정 추진계획**과 그간의 **우수사례**를 발표하였다.

< 차관회의 적극행정 연속 발표 개요 >

- ㅇ (**개요**) 기관별 '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계획 및 우수사례를 연이어 발표
- ㅇ (**대상**) 차관회의 참석 기관(27개 부처 등) + 청 단위 2개 기관
- ㅇ (**시기**) '20.9.3(목)~10.22(목), 7차에 걸쳐 진행 (하루 4개 기관, 기관별 3분 발표)

□ 이날 발표에서 산업부는 △신산업 육성, △통상환경 변화 대응, △그린뉴딜 추진 등 **3가지 분야**를 **하반기 적극행정 실천과제**로 제시하였다.

❶ **(신산업 육성) 3대 신산업*** 등 **신성장 산업**과 **비대면**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**대책발표, 제도개선·기업애로 해소** 등 발빠른 조치 시행

* 시스템반도체, 바이오헬스, 미래차

❷ **(통상환경 변화 대응)** 일본 수출규제,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간 이동제한 등에 대응하여 **소부장 대책 및 기업인 출입국 지원** 지속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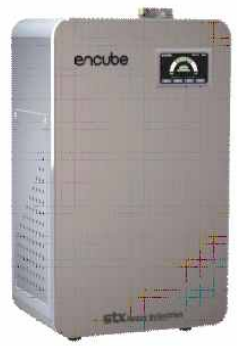
❸ **(그린뉴딜 추진)** 태양광·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및 수소경제 육성 등 **관련과제 신속 추진**

□ 산업부는 이와 같은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연내에 **주요 신산업 및 비대면 산업**에 대한 **종합 대책**을 마련할 예정이다.

○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한 **적극적 규제 개선**으로 제도상 걸림돌이 없도록 하며, 업종별 **업계·전문가**와 **긴밀한 소통**하여 현장의 **애로사항**을 **해소**해 나갈 계획이다.

□ 또한 산업부는 **규제 개선, 기업애로 해소** 등에 초점을 둔 적극행정 **우수사례 3건**을 발표하였다.

❶ 신속인증으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시장진출 애로해소



<고체산화물 연료전지시스템>

○ **고체산화물 연료전지***(SOFC)는 차세대 수소 연료전지로 각광받는 제품이나, 기존 제도로는 안전성·성능 평가가 어려워 **시장진출에 애로**

* 고체산화물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연료전지로, 기존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보다 발전효율·가격경쟁력 우수

○ 이에 산업부(국표원)는 해당 제품에 적합한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**신속**하게 **인증**을 부여함으로써 **시장출시 애로를 해소**('20.4)

○ 특히, **2년**이 소요되는 절차를 산업부의 규제혁신 제도인 **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***를 활용하여 **6개월**로 단축, 출시 시점을 앞당김

* 새로운 기술·제품이 기존 제도로는 적합성 인증을 받을 수 없을 때 별도 인증기준을 신속히 마련(6개월 내)하여 제품의 시장 출시를 돕는 제도

❷ 기업인 국경간 이동 애로해소를 위한 일괄 지원센터 운영

○ 코로나19 관련 **기업인**의 **국경간 이동 지원** 서비스를 **수요자 중심 일괄 지원방식**으로 개편하기 위한 **「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」*** 개소(8.13)

* (기능) 중소·중견기업인 특별전세기 이용 원스톱 처리, 출입국 관련 정보 종합제공
(참여기관) 산업부 + 외교·중기·국토부 등 관계부처, 무역협회·대한상의·코트라·중진공 등

○ **특별입국, 전세기** 등 **여러 부처**에 관련 업무가 산재하여 **기업**의 **혼란**이 있었으나, 센터 설치를 통해 **기업인**의 **어려움**을 **완화**

<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의 전세기 업무 처리 흐름도 >



※ 그 외 종합 정보안내, 건강확인서 발급 등도 지원

❸ 소수력 발전 적극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

○ **소(小)수력 발전***의 경우 **건물 설치기술**은 **미흡**하여 주로 야외에 설치, **건물 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제도***에 **미포함**되어 있었음

* 댐 등 대규모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적 수력과 달리 소규모 시설을 이용하는 수력발전(설비용량 10MW 미만), 환경 영향이 적고 건설비용이 저렴, 발전효율이 높은 장점이 있음

** (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)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보조금,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
(녹색건축법 시행령)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

○ 최근 **건물용 소수력 발전기술 개발**에 따라, 제도가 기술에 뒤처지지 않도록 **소수력**도 **지원대상**에 **포함**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('20.4~)

□ 정승일 차관은 "**코로나19** 등으로 실물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"이라며, "**불합리한 규제**를 **개선**하고 **기업 애로**를 **선제적으로 해소**하는 등, **산업분야 적극행정**에 더욱 힘쓸 것"임을 강조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 김다은 사무관(☎ 044-203-553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